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9(목) 10:40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9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2. 21
- 라. 회부일자 : 2022. 12. 2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간주처리	
계	771,331,611	771,331,611	622,601,831	12,006,600	54,447,176	82,276,004	- <53,068,736>
일반회계	753,864,214	753,864,214	608,145,854	12,006,600	53,695,996	80,015,764	- <50,868,736>
특별회계	17,467,397	17,467,397	14,455,977	-	751,180	2,260,240	- <2,200,000>
의료급여	820,035	820,035	636,085	-	166,950	17,000	-
주민소득	642,392	642,392	291,400	-	350,992	-	-
주차장	16,004,970	16,004,970	13,528,492	-	233,238	2,243,240	- <2,200,000>

4.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교부세(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합계 : 4개 부서 / 6건		24,945,638	10,586,230	3,680,000	1,500,000	4,706,230
주차관리과 (2건/2,200,000천원)	공영주차장 건설	7,415,590	1,500,000		1,500,000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351,584	700,000	700,000		
건설행정과 (1건/3,939,257천원)	독산로 지중화 사업	3,941,057	3,939,257			3,939,257
도로과 (2건/1,926,973천원)	관내 도로보수 - 노후도로 정비 - 다중인파 밀집 지역 안전 사고 예방사업 - 두산로 외 3개 노후도로 정비공사	6,076,940	1,399,473			699,473
	신속한 제설대책	2,640,467	527,500	460,000		67,500
치수과 (1건/2,520,000천원)	안양천 기초환경정비	2,520,000	2,520,000	2,520,000		

5.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개 부서 6건 105억 8,623만원으로
 - 주차관리과 : 2건 22억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사유)
합 계 (2건)		9,767,174	2,200,000	
1	공영주차장 건설	7,415,590	1,500,000	· 이월내역 :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 이월사유 : 연도 내 지출 불가 - `22.10. 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도 내 지출 불가
2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351,584	700,000	· 이월내역 :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국비) · 이월사유 : 연도 내 지출 불가 -사업추진 일정상 연도 내 지출 불가

- 건설행정과 : 1건 39억 3,925만 7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사유)
합 계 (1건)		3,941,057	3,939,257	
1	독산로 지중화사업	3,941,057	3,939,257	· 이월내역 : 독산로 3단계 지중화사업 시설비 · 이월사유 : 연도 내 지출 불가 '22. 12월 또는 23. 1월중 사업 선정결과 통보 예정 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도로과 : 2건 19억 2,697만 3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사유)
합 계 (3건)		8,717,407	1,926,973	
1	관내도로보수	6,076,940	1,399,473	· 이월내역 : 노후도로 배수 등 재정비 공사 두산로 외 3개소 노후도로 정비공사 · 이월사유 : 22.12월 특별교부세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2	신속한 제설대책	2,640,467	527,500	· 이월사유 : 연도 내 지출 불가 - '22.12월부터 '23.3월까지 도로열선 전기사용료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치수과 : 1건 25억 2,000만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사 유)
합 계 (1 건)		2,520,000	2,520,000	
1	안양천 기초환경정비	2,520,000	2,520,000	· 이월내역 : 안양천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안양천 안전 및 편의시설물 정비, 안양천 제방길 보 행환경 개선, 안양천 제방 산책로 정비 · 이월사유 : 집행시기 미도래 - `22. 12. 8. : 특별교부금 교부가 결정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

○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 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